

#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0월 27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(제5조)
- 나.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의 실시(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
  -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20. ~ 10. 26.
  -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- 바. 부서협의 결과(자치행정과)
  - 실태조사 및 교육 대상 명확화 필요

- 하남시 본청 및 소속·하부행정기관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, 시의 위탁 사무 수행 단체

⇒ 집행부 의견 반영

##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5조 및 제6조,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**제6조(교육)** 시장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실태조사 및 교육 대상)**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본청 및 소속·하부행정기관
2.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
제8조(중전의 제5조)제4항 중 “제6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사용제한 등) ① ~ ③ (생략)</u></p> <p>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·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<u>제6조</u>에 의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8조(사용제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6조(교육) 시장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7조(실태조사 및 교육 대상)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</u></p>

제6조 ~ 제14조 (생략)

각 호와 같다.

1.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」에 따른 하남시 본청 및 소속·하부행정기관

2.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 
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
제9조 ~ 제17조 (현행 제6조부터  
제14조까지와 같음)